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 회칙

제1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

본 위원회는 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(이하 '본회'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회는 장영신 학생회관(이하 '신학관'이라 한다)을 비롯한 KAIST 교내 학생 문화 공간의 총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진정한 학생 공간을 위하여 공간에 대한 학생의 권리 보장과 학생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업무) 본회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교내 학생 문화 공간에 대한 학생 권리 보장
- 신학관의 일상적인 관리 및 운영
- 신학관 내 학생 문화 활동 지원
- 교내 학생 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

제 4 조 (회의) 본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총회
- 전체 회의
- 팀장 회의
- 팀 회의
- 기타 회의

제 2 장 위원

제 5 조 (위원)

본회의 위원은 본회에서 실시한 리크루팅을 통해 선발한 자로 한다.

제 6 조 (선발)

- 본회의 위원 선발 방식에는 정기 리크루팅과 특별 리크루팅이 있다.
- <u>본회의 정기 리크루팅은 매년 봄학기 개강 후 28 일 이내에 실시하며 지원자</u> 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·의결하여 선발한다.
- <u>본회의 특별 리크루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</u> 전체회의에서 심의·의결하여 선발한다.

- 전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한 경우
- 본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팀장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 받은 경우

제 7 조 (제명) 다음 각 항의 경우에 본회의 활동위원이 본회 위원의 제명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.

- 본회의 상근에 합당한 사유 없이 각 정규학기 당 4회 불참한 경우
 - 상근 불참에 대한 사유가 합당한지는 팀장회의에서 의결한다.
- 본회의 전체회의에 합당한 사유 없이 각 정규학기 당 2 회 불참한 경우
 - 전체회의 불참에 대한 사유가 합당한지는 팀장회의에서 의결한다.
- 본회를 악용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경우

제 8 조 (활동학기)

- '활동학기'란 본회의 위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을 말한다.
- <u>활동학기는 본회의 위원으로 들어온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 가을학기</u> 종강까지로 한다.
- 위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활동학기를 연장할 수 있다.
-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활동학기로 인정한다.

제 9 조 (위원의 구분)

- 본회의 위원은 활동위원, 특별위원, 명예위원, 준위원으로 구분한다.
- 본회의 활동위원은 활동학기 중인 위원으로 한다. 단, 활동학기 중이지만 휴 학 등 팀장회의의 판단 하에 합당한 사유로 상근 및 전체회의 참여를 행하지 않는 경우 준위원으로의 강등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. 활동위원으로의 승급은 해당 준위원이 상근 및 전체회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로 한다.
- 본회의 특별위원은 활동위원으로 3 학기 이상을 이행한 위원 중 본교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한다.
- 본회의 명예위원은 활동위원으로 3 학기 이상을 이행한 위원 중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.
- <u>단, 졸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활동학기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</u> 총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위원이나 명예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제 10 조 (위원의 권리와 의무)

- 본회의 활동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
 -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
 - 본회의 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
 -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
 - 본회의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
- 본회의 특별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본회의 총회에 참여할 권리
 - 본회의 활동위원의 교육을 지원할 권리와 의무
 -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
 - 본회의 사무실에 활동위원이 있을 경우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

제 3 장 회의

제 11 조 (회의)

본회에서 인정하는 회의에는 총회, 전체회의, 팀장회의, 팀회의, 기타회의가 있다.

제 12 조 (회의 참석자의 책임)

회의의 참석자는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 여야한다.

제 13 조 (구성원)

각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인원을 "구성원" 이라 한다.

제 14조 (의결권)

-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.
-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 15 조 (의장)

- 전체회의 및 총회
 - 회의 개회, 유회, 휴회, 폐회, 논의종결, 표결개시선언을 할 권한이 있다.
- 팀장회의, 팀회의 및 기타회의
 - 회의 개회, 유회, 휴회, 폐회, 논의종결, 표결개시선언을 할 권한이 있다.

제 16 조 (안건과 토론)

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된다.

제 17 조 (안건의 처리과정)

- 안건 상정
-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
-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
-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
-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
- 안건에 대한 의결

제 18 조 (논의종결, 재심의 등)

- <u>안건에 대한 논의종결은 의장이 제시할 수 있고, 재석 인원의 3/4 이상의 동</u> <u>의로</u> 성립된다.
- <u>재심의동의는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논의가 필요</u> 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회의가 일단 폐회하면 재심의동의 를 제출할 수 없다. 재심의안은 재석 구성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<u>수정동의는 안건을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 에서</u>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. 수정동의는 재석 구성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.
- <u>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심</u> <u>의하거나 안건 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회부하면 자동으로 기한 부</u> 연기된 것으로 본다. 회부동의는 재석 구성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.
-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. 연기동의는 재석 구성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9 조 (발언권) 총회 및 전체회의에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할 수 있다.

-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.
- <u>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 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.</u>
-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.
- <u>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</u> <u>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.</u>

• <u>제 1 항부터 제 4 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</u> 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 20 조 (의제 이외의 발언 등)

구성원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는 의제 이외의 발언, 회의체나 구성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,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. 이에 해당하는 발언 시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 키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 21 조 (표결)

-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.
-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.

제 22 조 (표결방법)

- <u>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 는</u> <u>재석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1/5 이상의 요구가 있</u>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.
- <u>표결에는 회의장에 재석한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. 재석인원에 변동이 있 으면</u>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.

제 23 조 (표결결과선포)

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.

제 24 조 (회의록)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
- 1. 회의 장소
- 2. 개회·휴회·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
- 3. 개회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
- 4. 구성원의 지각·조퇴·결석·대리선임 사항
- 5. 안건의 제목과 내용
- 6. 의사
- 7. 표결결과
- 8.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4 장 총회

제 25 조 (지위)

총회는 본회의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.

제 26 조 (구성)

총회는 본회의 활동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된다.

제 27 조 (의장)

-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.
- <u>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본회 총회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</u>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.
- <u>위원장단 및 팀장단이 모두 부재 시에는 본회 총회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 반수</u>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이나 특별위원 중 1 인을 의장으로 한다.

제 28 조 (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.

- ① 정기총회는 매년 학사일정에 따른 겨울방학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본회의 활동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29 조 (역할)

- ① 본회의 존립 및 위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,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 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.

제 30 조 (의결)

- ① 본회의 활동위원 2/3 이상의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과 1/4 이하의 기권으로 의결하다.
- ② 기권 표 수가 재석 인원의 1/4 이상인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고 재의결을 실시한다.

제 5 장 전체회의

제 31 조 (지위)

전체회의는 본회의 상설적인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. 제 32 조

(구성)

전체회의는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구성된다.

제 33 조 (의장)

- ① 전체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본회 전체회의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단 및 팀장단이 모두 부재 시에는 본회 전체회의에 재석한 활동위원 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이나 특별위원 중 1 인을 의장으로 한다.

제 34 조 (소집)

- ① 전체회의는 정규 학기 동안 매주 1 회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단,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,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 다.
- ③ 활동위원 1/3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35 조 (역할)

- ① 팀장회의에서 전체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.
- ② 본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.
- ③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 - 본회의 위원장 선출
 -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의결
 - 본회의 위원 선발에 대한 심의 및 의결
 - 본회의 위원 제명에 대한 심의 및 의결
 - 본회의 위원장단 탄핵 의결
 - 본회의 팀 구성 및 개편
 - 본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
 - <u>기타 본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, 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회 의의</u>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

제 36 조 (의결)

- ① 본회의 활동위원 2/3 이상의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과 1/4 이하의 기권으 로의결한다.
- ② 기권 표 수가 재석 인원의 1/4 이상인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고 재의결을 실

시하다.

제 6 장 팀장 회의

제 37 조 (지위)

팀장회의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전체회의가 일정 권한 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.

제 38 조 (구성)

팀장회의는 본회의 팀장단, 위원장단으로 구성된다.

제 39 조 (의장)

- ① 팀장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팀장단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1 인을 의장으로 한다.

제 40 조 (소집)

- 팀장회의는 정규 학기 동안 의장의 주 1 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.
- 단,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,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팀장회의 구성 인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팀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41 조 (역할)

- ① 각 팀의 1 주 간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.
- ② 본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.
- ③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한다.

제 7 장 팀 회의

제 42 조 (지위)

팀 회의는 각 팀이 담당하는 공간 또는 분야에 대해 실무적인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이다.

제 43 조 (구성)

팀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팀의 구성원으로 결정된 활동위원들로 구성된다.

제 44 조 (의장)

- ① 팀 회의의 의장은 각 팀의 팀장으로 한다.
- ② 팀장 부재시 각 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 중 한명 을 의장으로 한다.

제 45 조 (소집)

- ① 팀 회의는 정규학기 동안 의장의 주 1 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단,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,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 46 조 (역할)

- ① 팀이 담당하는 공간 또는 분야의 활동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.
- ② 팀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한다.

제 8 장 기타회의

제 47 조 (지위 및 구성)

- ① 기타회의는 본회의 원활한 실무 진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열리는 심의기구 이다.
- ② 총회, 전체회의, 팀장회의, 팀 회의를 제외한 본회의 회의는 기타회의로 정한 다.
- ③ TF(Task force)를 제외한 모든 기타회의는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구성된다.
- ④ 단, 교육 지원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

제 48 조 (역할)

본회의 실무에 관하여 논의한다.

제 9 장 위원장단

제 49 조 (지위)

- ①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궐위 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.

제 50 조 (임기)

- ① 위원장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회 익일부터 다음 해 총회까지로 한다.
- ② 전임 위원장의 궐위 시 남은 임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른다.
 - 1. 임기가 정규학기 기준 1 학기 이상 남은 경우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선 출된 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 총회까지로 한다.
 - 2. 임기가 정규학기 기준 1 학기 미만 남았고 인수인계 기간 중인 위원장 선출자가 없는 경우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 부위원장을 임시 위원장으로 하고 임시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총회까지로 한다.
 - 3. 인수인계 기간 중인 위원장 선출자가 있는 경우 선출자는 즉시 위원장으 로서 임기를 시작하고 임기는 다음 해 총회까지로 한다.
- ③ 부위원장의 궐위 시 출마한 부위원장 후보자를 전체회의에서 활동 위원 2/3 이상의 재석, 과반수의 득표를 통해 인준한다.

제 51 조 (역할)

- 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.
 - 총회, 전체회의, 팀장회의의 의장이 된다.
 - 본회의 대내외 활동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.
 - 전체학생총회, 전학대회,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의 직무 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.

제 52 조 (선출 및 인수인계)

- ① 위원장의 선출은 11월 첫 전체회의에서 호선으로 이루어지며 후보자는 선출 3일 이전까지 지원사유,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서를 활동위원 전체에게 공개해야 하다
- ② 활동위원 2/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.
 - <u>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</u> <u>득표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 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 여</u> <u>결선투표를 실시하고,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결선투</u> 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 명 이상일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.
- ③ 단선의 경우 활동위원 2/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- 선출 직후부터 임기 시작까지의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.

제 53 조 (탄핵)

① 활동위원 1/3 이상의 발의로 위원장의 탄핵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장의 탄핵안이 상정될 경우 활동위원 2/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또는 팀장단 중 1 인을 전체회의의 의장으로 한다.
- ③ 활동위원 2/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탄핵 의결 시 제 36 조 제 2 항을 따르지 않는다.

제 10 장 조직

제 54 조 (구성) 본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위원장단
- 2. 팀장단 및 팀

제 55 조 (팀)

- 본회의 총회 혹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구성된 상설적인 업무가 있는 조직을 '팀' 이라고 하며,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.
- 팀장 및 팀원은 활동위원으로만 가능하며, 팀장은 각 팀 내에서 호선한다.

제 56 조 (TF)

- 본회의 총회 혹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구성된 임시적인 업무가 있는 조직을 'TF' 이라고 하며,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.
- TF 는 모든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.
- 단. TF 의 팀장(TF 회의의 의장)은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한다.
- 각 TF는 매 주의 활동상황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.

제 57 조 (인사)

본회의 활동위원은 희망하는 팀에서 활동할 수 있다.

제 11 장 공간의 관리 및 운영

제 58 조 (권한)

본회는 학교 학생지원팀과 협의 한 '장영신 학생회관 운영 준칙'에 근거하여 장영신 학생회관 및 기타 학생문화공간의 일상적인 관리·운영 권한을 갖는 다.

제 59 조 (배정)

(1) '배정'이란, 특정 단체가 신학관 내 특정 공간을 일정 기간 이상 점유할 수 있

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배정의 시행은 "세칙: 단체실 운영 규칙"을 따른다.

제 60 조 (예약사용신청 및 허가)

① '예약사용신청 및 허가'란 제 59 조의 '배정'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학관 내 공 용 공간 및 기타 학생문화공간에 대하여 개인 혹은 특정 단체가 예약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61 조 (사용의 제한) 본회의 "세칙: 예약 판단 기준" 에 따라 공간의 사용을 제한한 다.

제 62 조 (사용허가 및 배정의 취소)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및 배정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, 변경,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본 회칙이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
-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
-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- <u>위원장단 및 해당 공간 담당 팀장의 판단 하에, 학생사회에 분란을 일으킬 만</u> 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
- 제 61 조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

제 63 조 (사용허가 제한의 예외) 본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경우 제 61 조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- KAIST 학부 총학생회 또는 총학생회 산하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
- 참석 주체가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인 경우
- 행사의 내용이 KAIST 학생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
- 기타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한 경우

제 64 조 (공간운영세칙)

- 공간의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를 비롯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 은 "세칙: 공간운영세칙"을 따른다.
- "세칙: 공간운영세칙" 의 제정 및 개정은 예약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.
- "세칙: 공간운영세칙" 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 또는 전체회의에서 심의 및 의

결하다.

- "세칙: 공간운영세칙"의 제정 및 개정 후 해당 "세칙: 공간운영세칙"을 3 일이내에 공고해야 한다.
- "세칙: 공간운영세칙" 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시행일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이후여야 한다.

제 65 조 (사업운영세칙)

본회의 공간관리를 제외한 기타 사업은 "세칙: 사업운영세칙"을 따른다.

제 12 장 개정

제 66 조 (발의)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

- 본회 활동위원 1/2 이상의 발의
- 본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팀장 2 인 이상의 발의

제 67 조 (공고)

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체회의 의장이 전체회의 3 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68 조 (의결)

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 후 첫 전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.

부칙

본 회칙은 2019 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.